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02. 2.16 조례 제1103호

개정 2007. 3.28 조례 제1509호

2008. 6.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일부개정 2010. 11. 25 조례 제1736호

일부개정 2011. 11. 8 조례 제1808호

일부개정 2011. 12. 30 조례 제1820호

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전부개정 2020. 6.19 조례 제2622호(제명개정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홈페이지"란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활용공간을 말한다.
- 2. "이용자"라 시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다.
- 3. "전자민원창구"란 「전자정부법」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 원을 접수·처리 등을 하는 창구를 말한다.
- 4. "개인정보"라 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- 5. "비밀번호"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, 자료관리, 담당자 등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.
- 6. "웹표준"이란 국제 표준화기구(ISO, W3C 등)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 표준을 말한다.
- 7. "정보화부서"라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8. "담당부서"란 홈페이지 메뉴별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 대표 홈페이지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·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2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

- 제5조(홈페이지 구축) ①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·관리 한다.
 -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 - 1.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,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
 - 2. 생활·경제·농업·복지·안전·문화 등 분야별 정보 제공
 - 3. 전자민원창구 운영
 - 4. 광명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, 설문조사 등 기능제공
 - 5. 국내·외에 시의 홍보를 위한 자료
 - 6. 다양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
 - 7.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
 - ③ 시장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동등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전협의 및 점검) 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시 대표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서비스 및 자료의 유무 등을 사전 검토하고, 서비스 중

- 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·지도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페기를 권고할 수 있다.
- 제7조(홈페이지 운영·관리)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·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홈페이지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단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④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8조(외국어 홈페이지 운영) ① 시장은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, 교류, 관광유치,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,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락처 변경 시 정보 화부서의 장에게 즉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④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자료 갱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, 제4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는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이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·조정할 수있다.
- 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려는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혐의를 하여야 한다.
- ⑦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정보를 추가 입력할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 다만,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·인력으로 추가 입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10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메뉴 별 또는 게시판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게시 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
 - 2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
 - 3. 특정기관, 단체,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
 - 4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 - 5.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
 - 6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
 - 7. 욕설.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
 - 8. 실명 및 현주소(주민등록상)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 및 현주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, 실명 및 현주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

- 9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게시하는 경우
- 10.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
- 11.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인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삭제된 자료는 삭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팝업, 배너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.
- 1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시를 요청할 경우
- 2.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요청한 경우
- 3. 그 밖에 시정과 관련된 홍보

제3장 전자민원창구 운영

- 제11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,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, 민원처리 공개, 민원상담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여야 한다.
 -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"민원처리기준표"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.
- 제12조(인터넷 민원처리)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 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, 민원의 종류,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,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.
- 제13조(민원처리 공개)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-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, 처리과정,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를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민원상담기능의 제공)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,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.

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

- 제15조(열린게시판 운영)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열린게시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6조(의견수렴) 시장은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

- 제17조(개인정보보호)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- 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
- ③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안전대책)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전체자료 및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·관리하여야 하며, 사고발 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제19조(비밀번호 관리)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. 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〈2020. 6. 19 조례 제2622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